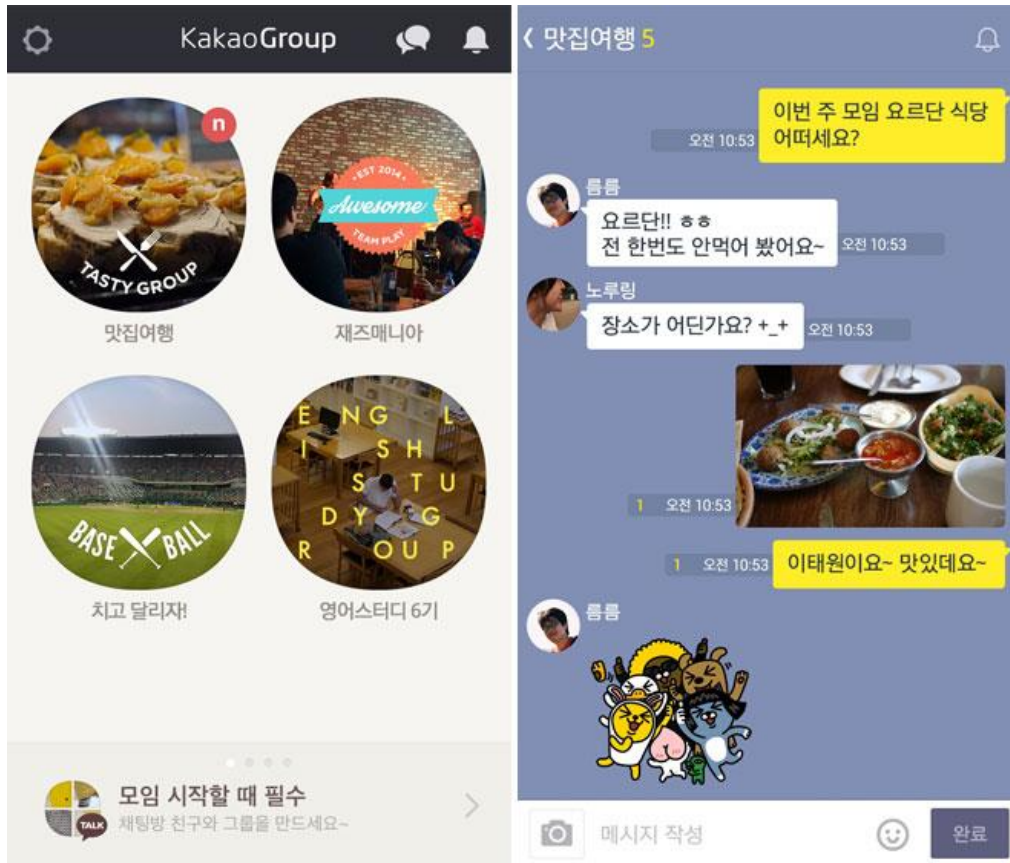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김가연 변호사
(사) 오픈넷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기소 사유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2014. 6. 14. - 8. 12.

7,115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령 제3조 제1항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DB 필터링? 키워드 필터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정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2013헌가17)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대법원 - 성인교복물(2014도5750)

-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 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성남지원 -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2014고단285)

-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정보매개자 책임 제한 내용

정보매개자(intermediaries)

- 인터넷상 제3자들이 생산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를 접근 제공, 저장, 전송, 또는 인덱스하거나 제3자에게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OECD, 2010)
- 정보를 편집하거나 직접 제작 또는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ISP, 웹호스팅 서비스, 검색엔진, 포털, SNS, 애플랫폼 등

정보매개자 책임 제한 방식

- **피난처(safe harbor):**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제3자 유통정보로 인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함. 보통 정보매개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던 경우임
-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감시(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서는 안됨

정보매개자 책임 제한 필요성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

-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한다. 즉, 인터넷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 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다.” (인터넷선거운동 제한 위헌 결정)
- “**개인들이 타인의 허락 없이 공적 소통을 할 자유**”

이용자의 인권

- 사적 검열과 정보 차단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

- 과도한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자원 낭비, 산업 위축, 진입 장벽 형성

국제적 흐름 - 일반적 감시 의무의 금지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 d.

“불법적인 제3자의 정보를 호스팅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절대 엄격책임을 지워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

“1. Member States **shall not impose a general obligation on providers**, when providing the services covered by Articles 12[단순도관], 13[캐싱], and 14[호스팅], **to monitor the information** which they transmit or store, **nor a general obligation actively to seek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ing illegal activity.**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512조 (m) “프라이버시 보호”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condition the applicability of subsections (a) through (d) on

- **(1) a service provider monitoring its service or affirmatively seeking facts indicating infringing activity...**”

한국 -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감사합니다.

8kkim8@gmail.com
kkim@opennet.or.kr